1982년 1월 25일 월요일 부산일보 8면

12년전 안전사고 보상은

【문】70년7월 군입대후 복무중 71년10월 안전사고로 손가락 두마디가 절단됐다.

그후 만기제대를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정상근·부산海雲臺구 中1동 1271 14통3반 金황기댁>

【답】귀하는 사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적어도 3년이 경과하기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불가능하다.

호적과 실제나이 틀려

【문】호적의 나이와 실제나이가 틀리는 여자인데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金옥·부산西구忠武동5가 25통6반、韓상철·부산北구大淸1동1048 20통5반>

【답】호적정정 재판을 받아야한다。구비서류는 호적등본(1)·주민등록등본(1)·인우인 보증서(1)·보증인 주민등록등본(2)·종합병원장발행 연령감정서(1)·학교졸업장 또는 재학증명서(1)。

차용증없이 돈빌려줘

【문】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지않았다。상환해주겠다는 약속날짜도 지났는데 법적상환절차는 어떤지。 <류경열·慶南泗川군昆陽면松田리 185>

【답】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있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면 가능하다。

전세 계약 解除하려면

【문】4백만원에 점포전세계약을 한후 사정에 의해 해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지불한 100만원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없는지。<吳동수·부산東구水晶2동 3통4반>

【답】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없어 정확히 해답할수는 없지만 관례적으로보아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하는 자가 청구할 수 없다。

논을 친척이 등기移轉

【문】61년10월 고향의 논 8백평을 매입한후 전지주에게 경작을 시켜 매년 쌀5가마씩을 받아 왔다。그런데 고향의 친척에게 본인앞으로 등기이전을 부탁했는데 69년부터 쌀을 보내주지않아 등기열람해보니 친척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 놓았고 이제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전지주는 63년 사망했고 그후부터는 친척이 경작해왔다고 한다。논을되돌려 받을 길은 없는지。

<崔말순·부산 南구 廣安1동518의22 오양맨션 203호>

【답】귀하의 경우 집안친척(현소유자명의)을 상대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輪禍 合意뒤에 후유증

【문】80년 5월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하면서 보상금 1백30만원을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후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해야할 형편인데 사고버스회사는 합의서에 후유증에대한 책임을 지지않기로 되어있다며 치료비를 지출할수 없다고 한다。

<李강한·부산北구萬德동 국민주택10B 279 17통2반>

【답】후유증에대한 유보없이 전체적인 합의를 했으므로 민사청구는 불가능하다。

證書없는 잔금 받을 길은

【문】80년10월 모조선소에서 선박건조를 도급받아 완공시켜주었는데 잔금 2백만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약속어음이나 기타 증서를 받지않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길은 없는지。

<강우남·부산影島구新仙1동222>

【답】2백만원 채권의 존재를 아는 증인이 있으면 채권일반청구절차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며 그렇지않더라도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시인하면 청구가능하다。

전혀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관계의 불명료로 인해 청구가 기각될수 있다。

<盧武鉉법률사무소>